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2016년 3월 보도자료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 진료행위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취소,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
-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 의무화
-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도 도입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 7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의협·병협 등 의료계, 의학회·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언론계, 환자단체 등 총 11명 참여(전체회의 3차례, 소위원회 2차례 개최)

- 동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험을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 이외에도 항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조정(자격정지 1개월→1년)한다.
 - 국민보건상 위험을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 또한,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한다.
- * 면허신고제도: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의료인 면허관리 주요 개선방안 요약 〉

구분	현행		개선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 ●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구체화 및 자격정지기간(최대 1년) 상향 ●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심의 비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면허신고 제도 개선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 등 신고 의무화 ● 진단서, 관련기관 정보활용,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
보수교육 내실화	매년 8시간 이수 운영관리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안전 교육 필수이수 ● 출결관리 등 운영관리 강화

-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면허취소토록 한다.
 - 첫째, ‘다나의원 사건’ 관련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2.17), 법사위 계류중).
 - 법 개정전이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 가능하다.
 - 둘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토록 한다(의료법 개정 추진).
 - 또한, 법 개정전이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 불가
 - 셋째,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토록 한다(의료법 개정 추진).
 -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그 외 비도덕적 진료행위 최대 1년 자격정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 ▷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 ▷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 ▷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 ▷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 ▷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

□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 '변호사법' 상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명령 가능

○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가능하며,

-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지면 즉시 자격정지를 해제한다.

□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동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되, 외부인사의 참여를 강화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문영역에 대한 심의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과목별 자문단 구성

□ (신고센터 운영)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 (면허신고 요건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 (신고항목 개선)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되나,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확인방법)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현행 의료법 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본인동의 하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 (허위신고 제재)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

- (동료평가 도입)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 ※ 캐나다는 진료수행, 전문성유지 관련 동료평가 실시(매년 700여명 대상)
 - (대상)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운영) 지역 의사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하여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차평가 등 구체적 방안 마련
 - (계획)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

형을 확정하여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 협의체에서 제기된 외국의 면허관리기구 사례에 대해 연구하여,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3. 보수교육 내실화

- (필수교육 도입)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또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운영관리 강화)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 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중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하여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의료인 면허관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선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강화	제재 실효성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 면허취소 처분 •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구체화 및 처분기준 최대 1년 상향 조정 •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심의 기능강화	중앙회 윤리위원회 심의 비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독립성 및 심의 권한 강화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및 지역사회, 보건소 상시 '신고센터' 운영
면허신고 제도개선	신고 항목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질환 • 마약·알코올 중독여부 등 신고 의무화
	검증 및 허위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 진단서·관련기관 정보 활용 검증 • 면허취소, 과태료 등 처벌
	동료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평가제도 시범사업
보수교육 내실화	교육 내용	매년 8시간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 필수이수 • 보수교육내용 다변화
	운영 관리	운영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관리 강화 • 보수교육평가단 운영

참고 2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일정	
구분	주요내용		
의료법 개정 ('16.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 면허취소 ○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 면허신고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조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분기준 상향조정 ○ 면허신고 항목 확대, ○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관련기관 정보 활용 ○ 보수교육 필수이수교육 도입 		
제도개선 사항 (~'1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 신고센터 설치 ○ 동료평가제도 도입(시범사업 후 법 개정) ○ 보수교육 운영관리 강화(출결관리 강화, 보수교육평가단 도입)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경감 현장 방문
- 서울대 윤영호 교수 등 93명에 대해 시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3. 21일(월) 10: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특히 이번 암 예방의 날 행사에서는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다.
 - 음주 수칙은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로 변경하였고,
 -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하여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였다.
 - 위 두 예방 수칙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근정훈장), 서창욱 연세대학교 교수(근정포장) 및 이경식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 소아암,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첨단방사선치료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서창욱 연세대학교 교수와,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착에 기여한 이경식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 종료 후 14시부터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과를 살피고, 치료중인 암 환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 과제로 추진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통해 지난 3년간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383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비급여 6,147억원을 경감하였다.

- 특히 암질환과 관련하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켈코리 등 49항목의 항암제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양성자 치료 등 82항목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 올해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 11항목의 항암제에 대한 기준 확대를 포함하여 200여 항목에 대한 급여 보장 확대를 통해 2,200억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하여,
 - 향후 5년간 국가 암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관리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1. 암 예방 수칙

붙임 1	암 예방 수칙
-------------	----------------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 예방과 조기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 -

□ 정부는 3월 2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정부위원 8명(교육·법무·복지·문체·여가부 장관, 기재·행자·산자부 차관), 민간위원 12명

○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이후 정부는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택 아동학대 사건 등 자칫 모르는 채로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드러났다.

○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이다.

□ 황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금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 아동학대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황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 ‘남의 집안 일’이라는 “방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야말로 아동학대를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 ①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초·중·고(정규교육과정), 대학(교양과목), 군대(정훈교육), 결혼(혼인신고, 이혼), 임신·출산기(보건소 및 산후조리원, 출생신고 등), 자녀 영유아기(어린이집·유치원,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등), 자녀 학령기(학교 입학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별 부모교육 실시
- ②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유아기부터 초·중등을 거쳐 인지하도록 추진 예정
- ③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조기 발견과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

한다.

-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예방 활동, 민간 단체·유관기관 등의 감시자 역할 강조

※ (예시)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리더(통·아·반장 등) 대상 교육 등 촘촘한 학대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 전파 등

- ④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나가고, 신고 의무 교육을 강화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 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정례화 하고, 민간단체나 아동 대상 제품관련 회사 등과 협력하여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2. 조기발견 강화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하여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

- ①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그간 숨겨져 온 학대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
 - *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15.12.23~16.1.27),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16.2월~3월), 사례관리자 종결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16.1월~3월),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16.3월),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 점검(16.3월~)
 - 영아, 유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예방체계와 함께 대상별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메뉴얼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
- ② 이러한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17년까지 구축한다.
 - 학대 고위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상시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3.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 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여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②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③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계획이다.
- ④ 연차적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예산안 편성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우선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리기로 하였다.

4. 학대 피해아동 보호 · 지원 및 재학대 방지

- ① 분리되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중증 피해아동에 대하여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해 나간다.
-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우선 보호되고 있는 아동중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맞춤형 돌봄 체계가 필요한데,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장애아동·다문화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보호 제공을 위해 관련 경력(의료인, 교사 등)이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가정위탁 서비스

- ③ 가정 복귀 이후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며, 학대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한 소득·취업·건강·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위기가정은,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5. 향후 추진 계획

-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 곧바로 시행할 과제

- ▷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환경 점검 확대 실시(16.4월~)
- ▷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교육·적용(16.4월~)
- ▷ 산후조리원·소아과 등에 리플렛 배포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16.4월~)
- ▷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TV광고 송출 등 대국민 캠페인(16.4월~)

-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과제

- ▷ 조기 개입, 서비스 연계·의뢰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16.8월~)
- ▷ 학대가정 위험도 평가척도 개선을 통해 분리보호·원가정복귀시 활용(16.7월~)
- ▷ 아동학대 사건처리 기준 강화·적용(16.7월~)

-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

- ▷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7년 상반기부터 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 ▷ 수요조사 등을 거쳐 연차적 현장 대응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반영
- ⇒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 완료 계획

○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

[붙임1]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

	결혼 전	임신·출산기	자녀 양육기			
			영아	유아	초중생	
교육 대상	학생, 군인, 예비부부	임신·출산부부	영아기 자녀(조)부모	유아기 자녀(조)부모	학령기 자녀(조)부모	
예 방	부모의 의미, 중요성 인식 등 부모역할(공통)					
	교육 내용	·임신·육아 ·과정이해 ·부모준비, 산후우울증 극복	·영아기 아동 발달특성 ·애착형성 ·과정 이해, ·양육기술·방법	·유아기 아동 발달특성 ·애착형성 ·과정 이해·양육기술·방법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특성 ·자녀와 갈등 해결방법	
	교육 계기	·교과과정반영 ·교양과목신설 ·군대 정훈교육 ·혼인신고	·산전검진 ·산후조리 ·출생신고	·국가예방접종 ·소아과검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및 입학 설명회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신청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설명회 ·부모공개수업	·학교입학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복지센터	·보건소 ·신생아도우미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학부모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민 간	·대학교육협의회 ·여대총장협의회 ·종교단체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사사회)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 협회)	·소아과, 약국 (소아과 의사사회, 약사회) ·육아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소아과, 약국 (소아과 의사사회, 약사회) ·육아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센터	·학부모단체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 ·청소년단체 협의회	

조기발견

가정 내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시설이용	미취학 학교밖 아동	취약가구 내 아동
·예방접종 ·의료기록 없는 아동 사유 ·안전 확인 ·양육수당 미신청가정 확인	·무단결석자 관리 ·대응 매뉴얼 활용 ·조기발견 ·관리대응 매뉴얼 적용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활용	·미취학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 활용 ·건강검진 정보와 타정보 분석	·저소득 ·다문화 ·장애아가구 복지 지원시 아동안전 확인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 3.31일부터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장모 씨(41세)는 첫째아이때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비스를 알아보고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했었다.

하지만 장씨는 이번에 둘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담당공무원이 출생신고를 처리한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양육수당은 물론,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 교환권, 다둥이 행복카드, 유축기 무료대여, 모유수유클리닉까지 출산 후 필요한 총 6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간단해졌다고 알려준 것이다. 더불어 셋째를 출산 시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귀땀해 줬다. 장씨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르면 못 받았을 수도 있는 혜택을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니, 정부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되뇌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른 국민의 편익 사례다. 이처럼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였다.

* (15.12.15.~16.2.29.) 출생신고 1,959건 중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1,856건(94.7%)

- 미신청(103건)은 구비서류인 통장사본 미비 등으로 발생
- (대민 만족도 제고) 민원인(특히 2자녀 이상의 경우)은 1장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출산서비스 신청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간·비용절약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

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신청자격) 출생아기의 부·모

※ (대리인 자격) 출생아기의 조부모

- (신청장소)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의 경우)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납입고지서상 고객번호 필요

□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 이번 전국 실시에 나선다.

○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출생신고 이후 방문한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 (종전) 출생신고 시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

※ (개선) 출생신고 완료 후 다음 날에도 신청가능. 단, 이 경우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두번째로,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를 강화하였다.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신고할 때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셋째,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해당 담당자에게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울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 (종전) 공무원이 신청서 사본을 복지담당·보건소·공공기관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 이송

※ (개선) 새울행정시스템에서 신청내역을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

□ 이번 전국 실시와 관련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서울 은평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임산부,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연 행사를 가졌다.

○ 시범실시 기간 중 은평구에서 행복출산서비스 제1호로 신청한 산모 이수진(36세)씨는 “첫째 아이 때는 몰랐던 서비스를 둘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모유수유클리닉까지 한 번에 한 장으로 신청해서 정말 편리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 육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행사 당일 셋째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윤지향(35세)씨는 “셋째아이 출산 후, 아이 셋을 데리고 출산지원서비스 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출생신고 한 번에 양육수당을 포함한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9개의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어 좋았고, 그 외에도 혜택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기뻐다.”고 말했다.

※ 은평구는 통합신청 대상서비스 외에도 수혜가능한 출산서비스 정보를 리플릿·안내책자·전자파일을 제작하여 출생신고·혼인신고 또는 보건소에서 임신확인 시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가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통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교육·취업·노후 등 생애의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출산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문기관(일반인 2, 다자녀 5), 신청서 작성(일반인 4, 다자녀 9), 구비서류(최소 4, 최대 7)가 다양하고 복잡

구분	출산 서비스	방문기관	신청서 작성여부	구비서류
일반인	① 양육수당(또는 보육료)	주민센터	○	신분증, 통장사본
	② 출산지원금 * 지자체 다수	주민센터	○	신분증, 통장사본
	③ 출산축하용품 * 연천군·구미시 등	주민센터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④ 유축기 대여 * 서울광진·김제시 등	보건소	○	신분증, 출생증명서
다자녀 (일반인 대상 서비스 포함)	⑤ 다둥이 카드 * 지자체 다수	주민센터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⑥ 아기보험가입 * 거창군·성주군 등	주민센터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⑦ 전기료감면	전력공사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전력공사)등
	⑧ 도시가스요금감면	도시가스회사	○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스공사)등
	⑨ 난방비감면	지역난방공급회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 등

□ 추진방안

○ (직접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1곳)하여 통합신청서 작성(1회)

- 주민센터는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으로 구비서류 간소화
- 수혜 서비스를 열거한 통합신청서로 수혜누락 방지

구분	출산 서비스	방문기관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일반인	4	2	1(주민센터)	4	1(통합신청서)	4	2(신분증·통장사본)
다자녀	9	5	1(주민센터)	9	1(통합신청서)	7	2(신분증·통장사본)

□ 추진내용

○ (통합신청)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할 때 출산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개별기관(부서) 처리 →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